



사 단
법 인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대한병원협회

수 신 전국병원장

(참조) 원무부서장

제 목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운영 및 서식개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동법 제58조제2항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362(2014.7.18.)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에 따라 산재, 폭행, 교통사고 등 급여제한 대상으로 판단되는 수진자의 경우도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 후 급여제한여부조회에 대한 공단의 회신에 따라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요양기관의 자체 판단으로 산재·폭력사고에 임의로 급여제한을 하거나 또는 급여제한여부 조회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요양급여 실시 후 '급여제한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통보하였음을 안내하며,

4. 아울러 '14.7.1일 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일부 개정되어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급여제한여부조회서 1부.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대한병원협회장



담당 보험국 사원 김영진 팀장 노환우 국장 류향수

시행: 대병협 보험 제2014-426호(2014.08.04.)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마포동 35-1) 현대B/D 13F

전화 02)705-9258 전송 02)705-9259 E-mail : yjkim@kha.or.kr